

심 사 보 고 서

2010. 9. 14.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10년 8월 19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0년 9월 1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55회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0. 9. 7)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 案 說 明 者 : 행 정 국 장 박 정 회)

가. 제안이유

- 2010 영등포구 조직개편 및 새로운 미래를 위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정원 기준보다 적은 기능직 공무원 정원 23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공무원 정원 23명을 증원(안 제4조 별표3).

3.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的 要 旨 (專 門 委 員 이 현 영)

- 업무가 제한적이고 그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 기능직(지도원 등) 공무원

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원을 감원하고,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행정기구 개편 등으로 인한 새로운 행정환경과 업무량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업무가 늘어나는 보건, 복지, 기술, 행정 수요와 여성인력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어, 시대 변천에 따른 정원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審査結課：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 호
----------	-------

제출연월일 : 2010. 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2010 영등포구 조직개편 및 새로운 미래를 위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4조(직급별 정원) [별표 3] 의 일반직 6급이하 정원 23명 증원 및 기능직 정원 23명 감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입법예고(2010. 8. 6 ~ 8. 10) 결과 : 의견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사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지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계	1,274	1,274			
정무직	1	1			
일반직계	1,004	1,004			
3급	1	1	-	-	-
4급	7	5	1	1	-
5급	60	29	2	11	18
6급이하	936	936			
별정직계	13	13			
기능직계	256	256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계	1,274	1,274				총계	1,274	1,274			
정무직	1	1				정무직	1	1			
일반직계	<u>981</u>	<u>981</u>				일반직계	<u>1,004</u>	<u>1,004</u>			
3급	1	1	-	-	-	3급	1	1	-	-	-
4급	7	5	1	1	-	4급	7	5	1	1	-
5급	60	29	2	11	18	5급	60	29	2	11	18
6급이하	<u>913</u>	<u>913</u>				6급이하	<u>936</u>	<u>936</u>			
별정직계	13	13				별정직계	13	13			
기능직계	<u>279</u>	<u>279</u>				기능직계	<u>256</u>	<u>256</u>			